충남대학교 부설 농업과학연구소 운영 시행세칙

［제정 1998. 3. 2.］

개정 2001. 4. 10.	개정 2002. 9. 5.	개정 2003. 11. 29.
개정 2004. 5. 21.	개정 2004. 10. 28.	개정 2006. 6. 15.
개정 2008. 3. 17.	개정 2009. 4. 24.	개정 2010. 1. 18.
개정 2010. 3. 17.	개정 2010. 4. 22.	개정 2011. 3. 9.
개정 2012. 7. 17.	개정 2012. 8. 20.	개정 2012. 10. 9.
개정 2014. 1. 1.	개정 2014. 4. 1.	개정 2015. 6. 1.
개정 2018. 3. 7.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에 관한 규정(전문개정 2006. 11. 01 규정 제1309호)제2조(적용범위)에 의거 충남대학교 부설 농업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관한 세부 시행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연구소는 농업과학의 기초 및 응용연구를 통한 농업의 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과학분야의 연구 및 연구결과 평가
2.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
3. 지역사회에 대한 농업기술 보급 및 농업정보 서비스
4. 논문집 및 기타 학술간행물 발간
5. 학술 연구과제 및 용역사업 연구비 관리
6. 국제 학술교류사업
7. 각 센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 (조직)①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와 연구지원부, 국제교류부, 학술부를 두며, 필요시 특수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각 부의 및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지원부: 연구소 행정 업무의 총괄계획, 모든 연구 안전관리 및 자료수집 업무, 연구소 특수사업 기획 등과 관련된 업무
2. 국제교류부: 국제공동연구, 세미나 및 교수와 학생의 국제교류, 홍보 업무
3. 학술부: 학술과 연구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업무, 「KJOAS」지의 간행 등 연구소 간행물에 관한 업무

제4조 (임원)①연구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고, 각 부 · 센터에는 부(센터)장을 두며,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부소장 또는 관련 부(센터)장이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소장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이 겸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및 위원의 직무)①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학장이 소장을 겸임할 경우, 부소장은 소장의 위임을 받아 책임연구원 회의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③각 부(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며, 연구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임원 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각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분야의 중요 업무를 심의하며, 부(센터)장의 소관업무 처리를 돕는다.

⑤연구소 임원의 임기는 소장 재임기간(2년)으로 하며 필요시 재임이 가능하다.

제6조 (책임연구원 및 전문연구인력)①연구소에는 책임연구원과 전문연구인력인 교수연구원, 전임연구교수,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전문연구요원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과 임명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다.

②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전임교원은 책임연구원이 된다.

③책임연구원은 전문연구인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직무와 관련 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제7조 (사무연구직) 연구소의 행정사무와 연구개발 사업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또는 연구직원을 고용하거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직원에게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책임연구원 회의)①정기회의는 연 4회 분기별로 개최한다.

②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조 ④항 및 ⑤항은 책임연구원 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또는 부소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는 연구소 임원을 포함하여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 및 연구사업계획에 관한 중요사항
2. 국제교류사업
3. 연구소 특수사업
4.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예산 및 결산

6. 연구원에 대한 연구 및 연수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7. 각종 연구비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8. 산하 센터의 설립, 평가 및 폐지
9.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 (학술위원회)①연구소가 발행하는「KJOAS」를 발간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책임연구원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술부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센터 설립 절차)①책임연구원은 교육·연구지원 및 수익사업을 위해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②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센터 설립 계획서(센터 명칭, 설립 목적, 인력,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 포함)
2. 조교수 이상 설립동의자 7인 이상의 서명 연명부
3. 기타 센터 설립에 관련된 자료

②센터의 설립은 연구소 임원회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결정한다.

제13조 (센터의 운영)①센터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고 본연의 사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항목, 방법,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③평가 결과는 센터의 존속 및 폐지여부 결정에 반영한다.

④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중요한 사항은 각 센터의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시행한다.

⑤각 센터의 업무는 [별표1]과 같다.

제14조 (경비)①연구소 경비는 연구 간접경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와 계약이 체결되는 시험 및 분석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총액의 10%를 간접경비로 계상한다.

③연구소 소속 수익사업 센터에 대해서는 15%의 간접경비를 계상하고 징수된 간접경비 중 9%는 산학협력단, 6%는 농업과학연구소에게 배분한다. 단, 토양환경분석센터, 사료검정인정센터의 간접경비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회계 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1. 4.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2. 9.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3. 11.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 5.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 10.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 6.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8. 3.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 4.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 1.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 3.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 4.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 3.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 7.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 8.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 10.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 3. 7.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센터 현황

교사시설구분	유형	센터명
연구시설	교육연구 지원센터	국제농업연구개발센터, 한국멸종위기종번식센터, 신복합산업지원센터, 국산재고도이용센터, 기후변화대응친환경축산센터, 수목진단센터, 오일팜바이오매스연구센터, 유전자변형생물체위해성평가센터, 에코그린농촌센터, 곤충자원센터, 식물피노믹스센터, 농림축산식품창업지원센터, 농산물자조금연구센터, 산림복지업활성화센터
	수익사업 센터	토양환경분석센터, 사료검정인정센터, 식물분자마커 및 식품성분분석센터, 지능형수송포장센터